

1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구 분	2013년	2014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표구간 및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4,600만원</td> <td>15%</td> </tr> <tr> <td>4,600~8,800만원</td> <td>24%</td> </tr> <tr> <td>8,800~3억원</td> <td>35%</td> </tr> <tr> <td>3억원 초과</td> <td>38%</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표구간 및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4,600만원</td> <td>15%</td> </tr> <tr> <td>4,600~8,800만원</td> <td>24%</td> </tr> <tr> <td>8,800~1.5억원</td> <td>35%</td> </tr> <tr> <td>1.5억원 초과</td> <td>38%</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근로소득공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80%</td> </tr> <tr> <td>500~1,500만원 이하</td> <td>50%</td> </tr> <tr> <td>1,500~3,000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3,000~4,500만원 이하</td> <td>10%</td> </tr> <tr> <td>4,500만원 초과</td> <td>5%</td> </tr> </tbody> </table>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70%</td> </tr> <tr> <td>500~1,500만원 이하</td> <td>40%</td> </tr> <tr> <td>1,500~4,500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4,500~1억원 이하</td> <td>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td> </tr> </tbody> </table>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추가> 공제금액 : 연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공제금액 : 연 50만원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관련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한도) 400만원 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아동·초·중·고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 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 10%)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적용대상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 : 25%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적용대상 세액공제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만원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구 분	2013년	2014년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제(소법 §52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액의 60%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 ※ 2014.1.1.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세액공제(조특법 §95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세액공제 :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 세액공제 한도 : 75만원 ※ 2014.1.1.부터 소급하여 세액공제 적용
전세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세대주*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능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 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부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9%(2014.3.14.이후 차입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만원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000 + (산출세액 -50만원)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 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 (금액 기준 삭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 (학교외 구입)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제외 - (좌 동)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율)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 : 50%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 :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제외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구 분	2013년	2014년
정치자금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적용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 : 25%)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신 설>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1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지에 한정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적용기한: '16.12.3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기부금 : 5년 - (좌동)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제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단일세율 적용(비과세, 공제 등 미적용) - <신 설>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과세특례 제외 대상자 :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과세특례 적용기한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감면비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 - <추가> ○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 '1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1.1.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종전규정(감면비율 100%)을 적용 ○ 적용기한 : '15.12.31.(2년 연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매출액·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 <추 가> ○ 소득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감소분 × 50%(한도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 제> - (좌 동) - (좌 동)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소득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구 분	2013년	2014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 분기별 2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펀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공제 제외 ◦ 적용기한 : '15.12.31까지 가입분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한도포함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 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특별 소득공제	주 택 자 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① + 주택마련저축공제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5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 + ② +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 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 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20%(2012년), 30%(2013년), 50%·30%(2014년) : 벤처조합·벤처기업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3년 이전 투자</td> <td>소득금액의 40%</td> </tr> <tr> <td>'14년 이후 투자</td> <td>소득금액의 5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40%)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40% 공제대상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 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 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이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p>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p> <p>-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p>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p>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 (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14.1.1. ~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세액감면</p> <p>*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p> <p>-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p> <p>*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p> <p>-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p>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63만원, 66만원)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산출세액</th> <th>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만원 이하</td> <td>55%</td> </tr> <tr> <td>50만원 초과</td> <td>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p><공제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백만원)×1/2] →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자녀세액공제	1명당 세액공제액 2명 이하 15만원 3명 이상 20만원	<p>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연 금 계 좌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 12%	<p>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p> <p>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p>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 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 료 비	㉑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용 ·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㉒ 65세 이상		
			㉓ 장애인		
			㉔ 그 외 부양가족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㉒ < 총급여액 3%	(㉑+㉒+㉓) - (총급여액 3% - ㉒)
				㉒ >= 총급여액 3%	(㉑+㉒+㉓) + 적은금액(㉒-총급 여액 3%), 700만원
※ ㉒, ㉓, ㉔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교 육 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한도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대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근로자 본인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 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2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 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 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